

■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

[표1]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026년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
본인부담금율	기초수급자	0% 부담
	차상위계층[의료대상자, 경감대상자]	9%, 6%부담
	일반수급자	15% 부담

[표2]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2026년	분류							
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
금액(원)	17,450	25,320	34,120	43,430	50,640	57,020	63,530	70,080

[표3]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8,99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80,23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[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]

- (1).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.
- (2). 월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(3).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,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,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.
- (4).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(비급여)은 대상자(보호자)가 전부 부담한다.
 - ① 장기요양급여이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
 - ② 대상자(보호자)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
 -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